

##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안내문

그간 특허청은 위조상품의 제조·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여 그 신고내용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을 차등 지급해왔습니다.

그러나, 2021년 7월 1일 부터는 포상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일부 신고자의 집중 수령을 방지 하고자 최소 적발금액을 상향 조정(포상 금액은 직전 규정보다 상향 조정)하고, 연간 지급횟수를 축소함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o 주요내용

- 제2조(포상금 지급 대상자) : 적발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경우
- 제3조(포상금 지급기준) : 연간지급 횟수는 5회에서 2회로 축소
- 제3조(포상금 지급기준) : 최고 포상금지급액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

<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,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>

적발금액	포상금액
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	300만원
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	400만원
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	600만원
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	800만원
500억원 이상 1,000억원 미만	1,000만원
1,000억원 이상	2,000만원

- 부칙 : 시행일('21.7.1) 이전 신고한 건은 직전의 규정(훈령 제1030호) 적용

※ 규정전문은 첨부파일(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, 2021.7.1.시행) 또는  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궁  
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☎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김성일 주무관(042-481-5812)